

# 신간회의 ‘민족동권(民族同權)’ 운동과 식민지 체제의 균열적 성격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중심으로—

윤효정\*

## 〈차 례〉

1. 머리말
2. 재만동포옹호동맹의 조직과 신간회
3. 화교배척 진정 호소와 재만 조선인 박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문제제기
4.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일본국적법 적용 주장과 반식민주의적 효과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중심으로 신간회 운동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신간회의 재만동포옹호운동은 재만동포옹호동맹(이하 옹호동맹)을 매개로 전개되었다. 옹호동맹은 신간회 본부의 적극적 참여로 결성되었고, 신간회 지회는 옹호동맹의 지방 확산에 기여했다. 옹호동맹은 화교배척 반대 입장을 가지고 만주 조선인 학살 소문을 정정하고 재만 조선인 문제가 중국인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했다. 또한 중국인들과 우호적 관계 속에서 만주 조선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이는 재만 조선인의 중국 입적 지지 주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재만 조선인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인에게도 일본국적법을 적용해 탈적을 허용하라는 주장이기도 했다. 즉 재만동포옹호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의제는 조선 민족에게도 일본 민족과 동등한 법률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민족동권(民族同權)’이었다. 이처럼 신간회 운동은 외형적으로 조선인들에 대한 일제의 통치권을 전제한 개량적인 법적 권리 획득 운동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조선인의 신민회를 의미하지 않았다. 민족동권의 논리가 일제의 재만 조선인 문제 해결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이다. 일제는 상조권 관철을 통해 만주 진출을 적극화하고 만주 조선인들을 일본의 신민으로서

\*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일본국적법의 적용과 중국 입적을 통해 재만 조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옹호동맹의 견해와 충돌되었다. 만주 조선인들에게 일본국적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은 중국 국민으로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재만 조선인의 국적 이탈권(탈적권) 보장과 중국 입적 지지는 일제의 세력 범위에서 재만 조선인들을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 신간회 지회에서 기획한 강연회·연설회·주민대회와 지회대회는 이와 같은 주장을 조선인 사회의 공론으로 만들려는 과정으로 이는 일제가 곧 만주 조선인의 보호자라는 허황된 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조선 거주 조선인들에게도 이들의 삶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사고될 필요가 없다는 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신간회 운동의 방향은 내선융화 이데올로기가 조선 민중의 의식에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만동포옹호운동의 사례에서 볼 때 신간회의 민족동권 운동은 조선 민중이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에 흡수되거나 동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반식민주의적 효과를 꾀하면서 식민지 체제를 균열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민족협동전선, 신간회, 재만동포옹호동맹, 화교배척, 일본국적법, 국적이탈권, '민족동권(民族同權)', 반식민주의

## 1. 머리말

1927년 2월 신간회의 창립은 일제하 민족협동전선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족단일당 혹은 민족유일당으로 일컬어졌던 신간회는 조선공산당(이하 조공) 제2차 당대회에서 승인된 '민족운동에 관한 방침'의 '민족당' 구상의 실현<sup>1)</sup>이었다. 이는 제1차 국공합작기 중국국민당을 모델<sup>2)</sup>로 한 것으로, 코민테른의 식민지·반식민지 지역의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지지와 민족협동전선론은 신간회 창립의 한 배경이었다.

신간회는 창립 이래 지회와 회원의 확대를 통해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면서 민족단일당의 외형을 갖추었고 1920년대 중후반 국내 민족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즉 신간회는 기존 1920년대 전반 단계<sup>3)</sup>에 비해 민족협동전선운동의

1) 최규진,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정책』, 『대동문화연구』 3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7, 266쪽; 임경석, 『김철수와 조선공산당 제2회 대회』, 『역사비평』 60, 역사비평사, 2002, 184쪽; 전명혁, 『1920년대 한국 사회주의 운동 연구』, 선인, 2006, 319쪽.

2) 최규진, 위의 글, 264~266쪽.

3) 1922~1924년 민족협동전선운동에 대해서는, 이예숙, 『1922~1924년 국내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참조.

실상을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민족협동전선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준 신간회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지대했다. 그리고 연구의 진전과 체계화 속에서 신간회 운동을 이해하는 주요 핵심어는 비타협적 운동으로 정착되었다.

대표적으로 이균영은 신간회 운동을 비타협적 운동으로 이해하는 기본적인 사유 틀에서 신간회 각 지회의 활동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검토 결과는 비판적이었다. 신간회의 활동 내용이 신간회 이전 사회운동 단체들에서 전개한 것과 유사했을 뿐 아니라 신간회 스스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sup>4)</sup>했다. 신간회 창립 무렵 새롭게 제기된 비타협적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내용 면에서 그다지 참신할 것이 없었고 방법 면에서도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관찰이었다.

신간회가 본연의 목표였던 비타협적 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관찰은 신간회가 왜 이러한 한계를 가졌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27년 말 이래 지회 차원에서 제기된 조직 개편 논의는 신간회의 활동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sup>5)</sup> 또한 1929년 6월 북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 규약과 신간회 해소운동은 기존 각 지회의 조직 개편 요구의 연장으로 파악되었다. 즉 개정 규약은 지회 중심의 '민족적, 민중적 힘을 결집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해소운동은 '신간회 운동의 실천적 의지'로 평가<sup>6)</sup>되었다.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규약 개정 이후 계획된 민중대회는 신간회의 조직 개편에 힘입은 '실천적 활동'<sup>7)</sup>으로 주목되었다.

요컨대 민중대회가 대중의 실천 투쟁 계획이자 비타협적 운동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었던 만큼 이균영의 연구에서 비타협적 운동이란 식민지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저항투쟁 또는 항일투쟁을 함의했다. 또한 항일적·반일적인 실천으로서 비타협적 운동은 신간회가 처음부터 지향했던 목표였고

4)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264~265쪽.

5) 이균영, 위의 책, 265~287쪽.

6) 이균영, 위의 책, 176쪽, 466쪽.

7) 이균영, 위의 책, 212쪽.

신간회 운동의 전 과정은 이 목표 실현을 위한 자기 지양의 역사였다.

이러한 입론에서 현실에서 전개된 신간회의 활동은 이상적인 비타협적 운동과 대조되는 실천이 부재한 온건한 것이었다. 즉 신간회는 “식민지 조선 민중의 정치적, 사회적 훈련의 도장 혹은 일제 통치세력에 일정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는 단계의 민족협동전선”<sup>8)</sup>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는 신간회의 조직 개편 논의의 흐름을 소재로 하여 그간 모호했던 비타협적 운동의 실체를 보여주고자 한 시도였다. 그러나 항일투쟁 형태의 높은 단계와 그렇지 못한 형태의 낮은 단계라는 수준 설정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운동이 발현되는 양태는 여러 주객관적 조건의 산물이다. 운동의 특징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운동의 현상이 비타협적 운동이라는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해는 결국 현실의 신간회 운동에 대한 연구 시야의 폭을 좁혔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 신간회 운동을 ‘합법적 정치운동’으로 파악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합법적 정치운동’은 합법적 영역을 최대한 활용해 대중의 일상적 이익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운동이면서도 비타협적 성격을 지닌 것<sup>9)</sup>으로 이해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 극복해야 하는 온건성으로 이해된 신간회의 현상과 이상으로 이해된 비타협적 운동 간의 간극을 해제했다. 즉 전자에서 후자로 발전해 가는 상을 설정하기보다 신간회 운동을 일제에 대한 비타협성을 견지한 ‘합법적 정치운동’으로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중심을 신간회 운동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에서 실제 내용, 즉 ‘합법적 정치운동’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비타협성과 ‘합법적 정치운동’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합법과 타협이 즉자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sup>10)</sup>은 타당하다. 그러나 식민지 체제에서 조선 민중의 일상 이익과 ‘민주주의적 권리’ 운동은 개량성을 포함한다. 즉 운동 내용상의 개량성과 체제 저항성 또는 항

8) 이근영, 위의 책, 379쪽.

9) 윤덕영,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113~114쪽.

10) 윤덕영, 위의 글, 114쪽.

일성으로 이해되는 비타협성을 하나의 단체가 동시에 가진 속성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이어주는 매개고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신간회의 비타협성을 부정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주된 연구의 소재는 정우회선언이었다. 신간회 탄생의 사상적 근거를 정우회선언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우회선언은 조공의 입장으로 이해되었고, 무엇보다도 '타협적·개량적 운동'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 이 선언의 지지자들이 취한 태도가 주목되었다. 즉 이들은 타협과 개량을 부정하기보다 타협과 개량이 혁명운동과 대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sup>11)</sup>는 점이 강조되었다. 타협과 개량은 반박되지 않고 인정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우회선언은 대중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대중의 직접 이익과 의식 고양을 추구한 '합법정치운동'의 천명으로, 신간회는 '타협적·개량적 요소를 포함한 대중정당'으로 평가<sup>12)</sup>되었다.

이에 따르면, 비타협적 운동은 신간회가 처음 스스로 설정한 혹은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었다. 즉 이 연구는 항일성·비타협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식민지 현실을 인정한 속에서 전개된 타협과 개량의 측면에서 신간회 운동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신간회의 타협적·개량적 성질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는 주목할 만하다. 조공의 신간회 참여는 6·10만세운동의 실패를 배경으로 했다. 그리고 조공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실패의 원인을 일제에 맞서려고 하지 않는 대중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찾았다. 이들의 눈에 비친 6·10만세운동 당시의 대중은 3·1운동 시기처럼 시위투쟁에 동참하지 않았다.<sup>13)</sup> 즉 조공의 신간회 운동 기획은 조선 민중의 주체적 투쟁 역량이 떨어진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

또한 조공의 사회주의자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당의 합법단체<sup>14)</sup>

11) 김영진, 「정우회선언의 방법과 내용」, 『사림』 58, 수선사학회, 2016, 94쪽.

12) 김영진, 위의 글, 91쪽, 100쪽.

13) РГАСПИ, Ф.495, ОИ.135, Д.146, ЛЛ.20-31, 1927년 2월 10일, 「조선공산당 제2차 창립대회에 대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김철수의 보고서」, 강성희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XXI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선인, 2015, 180쪽. 이하 『러시아문서 번역집』 21로 표기함.

14) 일제하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비밀결사의 형태를 모체로 하여 공개적인 합법단체와 연관을 가지고 활동했다. 3·1운동 이후 비밀결사 콤그룹은 합법 영역에 존재한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모임이었던

를 사상단체에서 민족당으로 변경했다. 이는 6·10만세운동 관련자들의 취조 과정에서 당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진행된 대대적인 조공 탄압<sup>15)</sup>에 대한 반응이었다. 검거와 망명으로 225명에 이르던 당원 수는 90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다.<sup>16)</sup> 조공 내에서는 일제의 감시가 용이했던 원인으로 사상단체가 지적되었다. 즉 당원들이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사상단체의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를 받기 쉬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괴멸이라는 상황 앞에서 당대회에서는 사상단체의 해체가 결의되었다. 또한 같은 대회에서 결정된 민족당은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조직 방침인 동시에 조공의 새로운 합법단체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신간회의 활동 방향을 예고했다. 조공의 입장에서 신간회는 경찰의 탄압과 당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이었다. 즉 신간회의 활동은 사회주의자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제와 직접적인 갈등과 마찰을 빚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sup>17)</sup>

이처럼 조공의 입장에서 조선 민중의 투쟁성은 강하지 않았고, 어렵게 복구한 비밀결사 당의 진용은 일제 경찰로부터 지켜내야 했다. 즉 조공의 사회주의자들은 연구사적으로 이해된 대중의 항일투쟁과 같은 실천적인 비타협적 운동을 신간회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거나 비타협성을 신간회의 정체성으로 삼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신간회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곧 비타협적 운동이라는 기본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신간회는 왜 비타협적 운동을 하지 못했는가, 즉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신간회는 무엇을 소재

여러 사상단체들을 매개했다(임경석,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22~23쪽). 조공의 합법단체란 비밀결사 조공이 대중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연계한 당과 표리관계를 이루는 사회단체였다.

15) 1926년 여름 대대적으로 진행된 조공 탄압 사건에 대해서는, 임경석, 『강달영,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265~272쪽 참조.

16) РГАСПИ, Ф.495, ОП.135, Л.128, ЛЛ.42-47, 1926년 12월 27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방비서국에 보내는 조선공산당 활동에 관한 안내 자료에서』, 『러시아문서 번역집』 21, 150쪽.

17) 이상 조공 제2차 당대회의 합법단체 변경 내용과 함의에 대해서는, 윤효정, 『신간회의 창립 과정 연구 -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7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358~360쪽 참조.

로 어떻게 활동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즉 신간회가 제기한 사회적 의제는 무엇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되었으며 그것의 함의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신간회는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민족협동전선운동은 식민지·반식민지의 민족해방을 목적으로 했다. 이 점은 이념과 관계없이 공유된 사항이었다. 가령 조공의 김준연(金俊淵)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양측의 '협력'은 "제국주의적 세력을 타파"하기 위해 두 세력 모두 인정하고 있다<sup>18)</sup>고 기술했다. 이에 따르면, 민족·사회 양 세력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체제의 전복이라는 근원적인 목표를 위해 협동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민족주의자 이관용(李灌鎔)은 코민테른을 반제국주의 약소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인식했고 코민테른을 중심으로 '전세계노동계급과 약소민족'이 함께 '공동전선'을 만드는 것이 '현대대세의 일반적 경향'<sup>19)</sup>이라고 분석했다.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도 민족해방을 위해 선진국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는 가능한 일이었고, 세계 무산계급 혁명을 위해 정책화된 코민테른의 약소민족 해방운동 지원과 민족협동전선론은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체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민족협동전선체로서 신간회 운동은 식민지 체제를 부정하는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그것이 노골적인 항일성을 띤 실천적인 비타협적 투쟁의 외형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정우회선언의 지지자들이 향후 전개할 민족협동전선운동의 타협성·개량성 문제보다 그것의 목적을 중시했다는 기존 연구의 관찰<sup>20)</sup>은 적극적인 문제의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민족협동전선운동으로서 신간회 운동이 식민지 체제와 어떤 방식으로

18) 金俊淵, 「朝鮮의 今日問題」, 『現代評論』 1-1, 1927년 1월, 42쪽.

19) 李灌鎔, 「現代大勢의 大觀」, 『現代評論』 1-1, 1927년 1월, 32쪽, 33쪽.

20) 김영진, 앞의 글, 100쪽.

긴장 관계를 만들어 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식민지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가 신간회 운동 속에 없었다면 또는 식민지 체제로 흡수되고 말 요소가 신간회에 혼재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식민지 체제 내에서 전개된 사회개량운동과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하게 비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1927년 12월에서 1928년 2월까지 진행된 신간회의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sup>21)</sup> 비타협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신간회를 이해하려 한 기존 연구는 운동의 구상이 담겨있는 정우회선언 등 텍스트를 중심으로 했다. 그러나 운동의 구상은 실상을 통해 실현되는 것인 만큼 운동의 전개 양태 검토는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민족협동전선으로서 신간회 운동의 특징을 보여주는 적절한 접근이 될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우선 재만동포옹호동맹의 추진 주체를 살펴봄으로써 신간회 본부를 구성한 주요 정치세력들의 의지로 본 동맹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해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간회 각 지회의 호응 양상 검토를 통해 신간회의 활동으로서 재만동포옹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어서 재만동포옹호운동의 내적 논리를 화교배척 진정과 재만 조선인의 중국 국적 취득 지지 방침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재만동포옹호운동의 사회적 의제를 ‘민족동권(民族同權)’으로 개념화했다. 민족동권은 지배민족과 약소민족 간의 동등한 법적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재만 조선인의 중국 국적 취득 주장이 일본국적법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일제의 재만 조선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과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신간회의 민족동권 주장이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식민지 체제와 긴장감을 창출했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21) 기존 연구에서 신간회의 재만동포옹호운동은 소략하게 다루졌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157~165쪽 참조.



## 2. 재만동포옹호동맹의 조직과 신간회

1927년 12월 4일 『조선일보』 사설은 재만동포 추방 문제를 다뤘다. 이 사설은 같은 해 11월 19일 중국에 입적하지 않은 조선인들을 15일 이내에 추방하겠다는 길림성장(吉林省長)의 명령에 주목했다.<sup>22)</sup> 즉 이 사설은 이전부터 자행되었던 재만동포 박해 문제가 명령을 통해 정책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길림성장의 명령에 앞서 같은 해 2월 27일 봉천성장(奉天省長)도 각 현에 10월 1일까지 입적하지 않은 조선인들을 모두 국외로 추방하라는 명령을 발표했다.<sup>23)</sup> 이에 따라 재만 조선인 추방 건수도 11월과 12월이 가장 높았다. 1927년 1월에서 1928년 2월까지 봉천성과 길림성에서 자행된 재만 조선인 압박 건수 170회 중 125회가 1927년 11월과 12월에 집중되었다.<sup>24)</sup>

이처럼 재만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추방이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 전해지자 1927년 12월 7일부터 군중의 화교배척이 벌어졌다. 당일 전북 이리에서는 화교 상점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비매동맹'이 조직되었고, 저녁에는 수십 명의 소년이 화교 주택과 상점에 돌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시작으로 수백 명의 군중이 화교 상점을 파괴하면서 폐점과 퇴거를 압박했다. 다음날인 8일 이리 시내에서는 화교 습격 9건, 화교 주택 및 상점 투석 2건, 화교 폭행 7건이 일어났다. 또한 익산면과 함열면에서도 화교 주택 및 상점 투석과 폭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경상자 수명, 중상자 네 명이 발생했다. 9일의 화교배척은 군산, 전주, 김제, 옥구 등 전북의 다른 지역으로 번졌고, 전주에서는 화교 주택 습격으로 사망자 한 명, 중상자와 경상자 각 5명이 발생했다.<sup>25)</sup> 이와 같은 화교배척에 관한 소식은 12

22) 『朝鮮日報』, 1927년 12월 4일, 「社說 在滿同胞驅逐에 對한 抗議」, 이신복 편, 이관구 저, 『成齋李寬求論說選集』, 一潮閣, 1986, 33~34쪽. 이하 『이관구 선집』으로 표기함.

23) 朝鮮總督府 警務局, 『在滿朝鮮人卜支那官憲, 附 滿洲ニ於ケル排日運動』, 1930, 293~294쪽(이명중,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연구」, 한양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150쪽에서 재인용).

24) 三村光三, 『在滿鮮人壓迫事情』, 남만주철도주식회사, 1928, 2쪽(이명중, 위의 글, 153쪽에서 재인용).

25) 이정희,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동양사학연구』 135, 동양사학회, 2016, 290~293쪽.

월 8일부터 언론 지면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를 배경으로 1927년 12월 9일 경성 지역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재만동포옹호동맹(이하 옹호동맹)이 조직되었다.<sup>26)</sup> 그리고 옹호동맹에서는 바로 다음날인 10일 위원장 한 명과 상무위원 12명, 위원 30명의 임원을 선정했다.<sup>27)</sup> 43명을 헤아리는 옹호동맹의 임원들이 속한 단체는 [표1]과 같다.

[표1] 재만동포옹호동맹 임원진의 소속단체별 분류(1927년 12월 10일)

신간회	본부	安在鴻*, 朴東完*, 李灌鎔*, 申錫雨*, 李昇馥*, 明濟世, (俞珪卿), 洪命憲*, 崔益煥*, 宋乃浩*	17
	경성	許憲, 朴儀陽, (朴澆), 俞鎮泰, 신석우*, 안재홍*, 송내호*, 홍명희*, 이관용*, 박동원*, 李英, (朴衡秉), 최익환*, 崔元淳, (李樂永), (權肅範), 이승복*, 韓國種, (徐郃哲), 鄭憲台	
	기타	李雲赫(鏡城)	
삼총 근우회		노총-이낙영, 권숙범, 농총-서태석, 청총-박형병, 근우회-劉英俊, (유각경)	5
종교		尹致昊(중앙기독교청년회), 유각경(기독교여자청년회), 박완(천도교청년동맹), 金起田(천도교청년당)	4
언론		조선일보-(안재홍), (신석우), (이승복) 동아일보-宋鎮禹 중외일보-李相協, 閔泰燾 조선지광-金東赫 현대평론-(이관용)	4
기타		상공인-金性洙, 李康賢, <sup>28)</sup> 朴承稷, <sup>29)</sup> 지주-張斗鉉, 梁在昶, <sup>30)</sup> 중국유학생-張子一, 미상-李國遠(李圖遠?) 기타-朴商圭, <sup>31)</sup> 林端鳳, <sup>32)</sup> 徐世忠, 金炳魯, 金應集, 金鐸遠 <sup>33)</sup>	13

\* 출처: 『東亞日報』, 『朝鮮日報』. 필요한 경우는 별도 표기함(본문 포함).

\* \*표는 신간회 본부와 경성지회 임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명으로 헤아렸다.

\* ( )는 중복인사로 괄호 안에 표기된 인물은 전체 인원수에서 제외했다.

26) 『朝鮮日報』, 1927년 12월 11일, 「各方面有志를網羅하여 在滿同胞擁護同盟」.

27) 재만동포옹호동맹의 임원 명단은 『朝鮮日報』, 1927년 12월 12일, 「兩民族의友誼尊重」 참조.

28) 경성방직 전무이사이자 공업협회 이사였다(『東亞日報』, 1926년 5월 9일, 「너무도야속해」; 『東亞日報』, 1926년 2월 22일, 「激憤한群衆과 熱化한攻駁」).

29) 布木商組合 소속이었다(『東亞日報』, 1927년 3월 10일, 「布木商組合 維持會發起」).

30) 장두현과 양재창은 지주였다(『東亞日報』, 1927년 4월 8일, 「10日에大會」).

31) 박상규는 1928년 6월 15일에 개최된 조선교육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다(『東亞日報』, 1928년 6월 18일, 「朝鮮教育協會에서 定期總會開催」).

옹호동맹은 각 사회단체의 대표들을 망라했다. 신간회 본부와 경성지회의 간부들을 비롯해 노총·농총·청총과 근우회, 기독교와 천도교 청년단체 등 종교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외 언론기관의 참여도 눈에 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등 주요 일간지와 조선지광, 현대평론 등 월간지의 편집인들도 참가했다. 또한 지주, 상공인과 중국 유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듯 옹호동맹은 조선 사회의 유력한 대중운동 단체와 언론기관을 모두 포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중 신간회 관련자는 다른 대중운동 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의 중복 참여자를 제외하면 17명으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회장·부회장, 총무간사와 상무간사로 구성되는 신간회 본부 간부진 13명 중 8명이 옹호동맹에 참가했다. 박동완(朴東完), 안재홍(安在鴻), 이관용, 신석우(申錫雨), 이승복(李昇馥), 홍명희(洪命憲) 등은 총무간사<sup>34)</sup>였고 송내호(宋乃浩)와 최익환(崔益煥)은 상무간사<sup>35)</sup>였다.

아울러 옹호동맹의 임원진을 선정한 12월 10일 신간회 본부 총무간사회의 서는 신간회 차원에서 '재만동포옹호동맹을 적극 후원'하기로 결의<sup>36)</sup>했다. 본부의 후원 결의는 각 신간회 지회가 출선해서 지역 차원에서 재만동포옹호동맹(이하 지방동맹)을 결성하라는 의미였다. 이는 "본회 공문과 같이 일반 시민을 망라하여 조직체를 축성"하겠다는 안동지회 총무간사회의 결의<sup>37)</sup>에

32) 임서봉은 1927년 12월 시점 소속단체는 불분명하지만, 1928년 12월 28일 신간회 주을지회 정기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었다(『朝鮮日報』, 1929년 1월 2일, 『朱乙新幹支會 3回定期大會』).

33) 서세중은 1928년 3월 21일 신간회 경서지회 설립 당시 회장이었고(『朝鮮日報』, 1928년 3월 24일, 『新幹京西支會 任員과討論議案』), 김병로는 1929년 1월 20일 경성지회 임시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었으며(『朝鮮日報』, 1929년 1월 22일, 『幹事選定後 代表會員選舉』), 김웅집과 김택원은 1929년 7월 21일 경성지회 임시대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이었다(『朝鮮日報』, 1929년 7월 23일, 『苦熱中 에盛況일운 新幹會京支大會』). 1927년 12월 시점의 소속 지회는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같은 지회 소속이었으리라 여겨진다.

34) 『朝鮮日報』, 1927년 2월 19일, 『部署까지整頓된 新幹會의陣容』; 京鍾警高秘 第7832號, 1927년 7월 13일, 『新幹會本部總務幹事會ノ件』, 1쪽.

35) 京鍾警高秘 第2413號, 1927년 2월 28일, 『新幹會常務幹事增選ノ件』, 1쪽. 이 문건에는 '崔益翰'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오기로 판단된다. 신간회 본부의 지회 설립 지원 활동에 대한 한 신문기사는 '본부 상무간사 崔益煥과 宋內浩'의 활동을 전했다(『朝鮮日報』, 1927년 5월 31일, 『新幹會支會 咸平서도設立』).

36) 『朝鮮日報』, 1927년 12월 12일, 『居留中國人에 報復迫害는不可』.

37) 『朝鮮日報』, 1927년 12월 22일, 『安東支會總務會』.

서 확인된다.

요컨대 옹호동맹은 상당수의 신간회 본부 간부의 주도적 참여로 결성되었고, 본부 총무간사회는 신간회 지회를 매개로 본 동맹의 지방 조직 확대를 도모했다. 따라서 옹호동맹은 신간회 운동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방동맹의 결성과 신간회 지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28년 2월 6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옹호동맹에 가맹한 지방동맹이 21개라고 보도했다.<sup>38)</sup> 한 개의 지방동맹이 십여 개의 사회단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21개의 지방동맹은 200여 단체의 가맹을 의미했다. 이 21개의 지방동맹 중 신간회 지회의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는 9건이고 참여가 추정되는 경우까지 합하면 14건이었다(부표). 이와 같은 수치에서 볼 때, 신간회 지회는 지방동맹의 결성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동맹의 옹호동맹 가맹 현황은 재만동포 문제에 대한 각 지역 사회의 열의와 비교할 때 매우 저조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일제 경찰의 탄압에 기인했다. 신간회 강릉지회의 사례처럼 일본의 외교 사안이라는 이유로 토론조차 금지<sup>39)</sup>되거나 길주동맹의 사례처럼 지역 사회 내에서 여러 단체 간의 합의 속에서 진용을 갖추었음에도 경찰의 금지 조치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기도 했다.<sup>40)</sup>

여러 악조건 속에서 옹호동맹에 가맹하지 못했다고 해도 재만동포 문제에 대한 각 신간회 지회의 관심은 높았다. 지회의 반응은 ▶옹호동맹 가맹 사례, ▶옹호동맹 가맹 또는 후원을 결의한 사례, ▶지방동맹을 조직하거나 조직할 것을 결의한 사례, ▶재만동포 문제를 토의한 사례(토의 금지 포함) 등으로 구분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28년 2월까지 설립된 111개<sup>41)</sup>의 지회 가운데 64개 지회가 위 네 가지 경우에 해당했다(표2). 이는 설립 지회의 절반을 넘는 비중으로, 재만동포 문제는 신간회 운동 기간 동안 지회들

38) 『朝鮮日報』, 1928년 2월 6일, 『在滿同胞擁護 200餘團體加盟』; 『東亞日報』, 1928년 2월 6일, 『同胞擁護同盟에 加盟團體200餘』.

39) 『朝鮮日報』, 1927년 12월 17일, 『江陵支會幹事會』.

40) 『朝鮮日報』, 1928년 1월 17일, 『吉州17團體 擁護同盟發起 그러나결국금지』.

41) 『朝鮮日報』·『東亞日報』에서 집계함.

의 관심을 가장 많이 모아낸 사례였다.

[표2] 재만동포옹호동맹에 대한 신간회 지회의 입장(1927년 12월~1928년 2월)

	지방동맹 조직/결의	옹호동맹 가맹	옹호동맹 가맹 결의/후원	재만동포 문제토론	계
경기	인천	개성, (廣州), 수원	京城, 안성	-	6/6
충북	괴산	-	청주	-	2/5
충남	-	-	-	공주, 당진	2/4
전북	-	(군산)	임실	정읍	3/8
전남	나주, 구례, 목포	光州	장성, 강진, 장흥	함평	8/14
경북	안동, 상주	영일	선산	예천, 대구, 김천, 하양	8/18
경남	밀양	(함양), 마산, (부산)	창원, (합천)	사천	7/13
황해	-	-	-	연백, 웅진, 장연	3/8
평남	-	평양, 안주	진남포	-	3/3
평북	선천	용천	신의주	-	3/4
강원	양양	-	-	高城, 강릉	3/4
함남	함흥	-	영흥, 북청, 홍원	정평, 안변	6/10
함북	길주	(웅기), 성진	鏡城	나남, 온성, 청진	7/11
일본	-	-	大阪	東京, 京都	3/3
계	12	14	17	21	64/111

\* ( )는 추정

\* 출처: 『朝鮮日報』, 『東亞日報』.

이처럼 옹호동맹의 조직과 지역 확산에는 신간회의 역할이 컸다. 따라서 옹호동맹과 지방동맹의 구성은 신간회의 외연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총·노총·청총 등 삼총 및 근우회, 종교 청년단체 등 대중단체와 언론기관, 상공단체의 포용은 신간회의 확장 계획을 암시했다.

이와 같은 신간회의 기반 확대의 능동적인 정치 주체는 누구였는지 살펴보자. 옹호동맹의 임원진 중 정치세력으로 분류 가능한 이들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듯 조공 당원 6명, 흥업구락부 소속 인사 5명으로 양 단체의 성원들

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이외 천도교청년동맹·천도교청년당에서 각 한 명씩 참가했다.

옹호동맹은 신간회 본부와 유사한 정치세력을 포괄했다. 신간회 본부는 흥업구락부, 조공, 천도교 구파가 중심이 되었고, 이중 흥업구락부와 조공의 비중이 천도교 구파에 비해 컸다.<sup>42)</sup> 옹호동맹이 신간회 본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조직되었던 만큼 양자를 구성한 핵심 정치세력의 유사함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흥업구락부, 조공, 천도교 구파는 옹호동맹의 결성 전후 시점 상당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비공식 협의기구인 ‘신간그룹’을 통해 신간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sup>43)</sup> 이 세 정치세력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신간그룹은 옹호동맹 결성의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표3] 재만동포옹호동맹 임원진의 정치세력별 분류(1927년 12월 10일)

조선공산당	宋乃浩, 李英, 朴衡秉, 李樂永, 徐韶哲, 李雲赫	6
흥업구락부	安在鴻, 朴東完, 尹致昊, 金應集, 張斗鉉	5
천도교청년동맹	朴浣	1
천도교청년당	金起田	1

\* 출처: 平壤地方法院 刑事部, 1929年 6月 4日, 『이영 등에 대한 공산당사건 판결』(이반송·김정명 지음, 한대희 편역, 『식민지 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1986에 수록);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중 「별표-1. 흥업구락부 例會 상황」; 『朝鮮日報』; 『東亞日報』.

다만 특이한 존재는 천도교청년당이였다. 이는 옹호동맹에 참여한 조공의 활동과 관련되었다. 우선 옹호동맹이 결성될 무렵 조공은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는 중이었고 이는 두 차례의 당대회 개최와 두 개의 당중앙으로 귀결되었다. 옹호동맹에 참여한 조공 당원들은 1927년 12월 21일 개최된 당대회의 결과 조직된 ‘12월당’의 멤버들이었다. 신간그룹을 구성한 조공 역시 ‘12월

42) 윤희정, 앞의 글, 373~375쪽.

43) 김영진,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과 ‘비타협’ 논쟁』, 『서울과 역사(구 향토서술)』 78, 서울역사편찬원, 2011, 184~189쪽 참조. 신간그룹의 연구사 비평에 대해서는, 김영진, 『1927년 하반기 식민지 정치운동 논쟁: 청산론 논쟁 재검토』, 『역사연구』 42, 역사학연구소, 2021, 294쪽 각주 55번 참조.

당이었다. '12월당'은 서상과를 중심으로 소수의 구 화요파 멤버들을 포괄했다.<sup>44)</sup> 이영(李英), 이낙영(李樂永), 이운혁(李雲赫), 서태석(徐邵哲)은 12월 당대회에 출석했고, 박형병(朴衡秉)과 송내호는 이 대회에서 간부로 선임되었다.<sup>45)</sup> 또한 이영, 박형병은 정치부, 이병의, 이낙영은 선전부, 이운혁, 서태석은 선전부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sup>46)</sup>

'12월당'은 자파의 당대회 이후 당 중앙위원회의 '올바른 정치' 덕분에 '민족주의적 농민단체인 천도교의 지지자들'과 '동아일보 주위에 결집한 민족주의자들'이 신간회에 가입했다고 보고했다.<sup>47)</sup> 이 보고서에서 천도교는 신파와 구파로 구분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칭되었다. '천도교의 지지자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보자.

천도교 구파와의 연대는 이미 신간회의 창립 무렵부터 이루어졌다. 즉 권동진(權東鎭), 박래홍(朴來弘) 등 천도교 구파의 중심 인사들이 신간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만동포옹호운동은 천도교 구파의 신간회 참여를 대폭 확대한 계기였다. 천도교청년동맹에서는 1927년 12월 25일 대회에서 '민족적 단일당 지지에 관한 건'을 토의한 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결의했을 뿐 아니라 '중앙부는 경성 재만동포옹호동맹에', '지방에서는 해당 지방동맹에' 가맹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을 결정<sup>48)</sup>했다. 즉 천도교 구파는 재만동포옹호운동을 겪으면서 신간회 참여 방식을 주요 인물들의 참여에서 집단적 참여로 변경했다.

그런데 '12월당'은 천도교를 '민족주의적 농민단체'로 설명하면서 대중 역량에 주목했다. 천도교청년동맹에 비해 천도교청년당이 양적으로 더 넓은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sup>49)</sup> 또한 후자는 상당수의 빈농층을 포괄했다.<sup>50)</sup> 따라서

44) 임경석, 『1927년 조선공산당의 분열과 그 성격』, 『사림』 61, 수선사학회, 2017, 147~148쪽.  
 45) 平壤地方法院 刑事部, 1929年 6月 4日, 『이영 등에 대한 공산당사건 판결』, 이반송·김정명 지음, 한대희 편역, 『식민지 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1986, 405쪽.  
 46) PГACПИ, Ф.459, ОП.135, Д.155, С.1, Л.9, 1928년 2월 24일, 『중앙집행위원 명부·중앙검사위원 명부·중앙간부원(김영만·김철수)』, 1쪽(김영진, 앞의 글, 2021, 292쪽 각주 47번에서 재인용).  
 47) PГACПИ, Ф.495, ОП.135, Д.156, Л.1, 33-58a, 1928년 2월 24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김영만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한 보고』, 이완중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XXII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PГACПИ)』, 선인, 2015, 45쪽. 이하 『러시아문서 번역집』 22로 표기함.  
 48) 京鍾警高秘 第14900號, 1927年 12월 27日, 『天道教青年同盟大會ノ件』, 4쪽.

‘12월당’의 보고에 등장하는 신간회에 가입하게 된 ‘천도교의 지지자들’은 천도교청년당원들을 지칭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들과의 연대는 다수의 농민을 신간회로 포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되었다고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 신간회 지회 차원에서 천도교청년당원들의 활동이 검출되었다.<sup>51)</sup> 보다 넓은 실태 조사가 요구되지만 이들의 신간회 참여는 재만동포 구축에 대한 천도교청년당원들의 동정과 공감이 ‘12월당’의 신간회 조직 확장 계획과 맞물리면서 얻어진 성과였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동아일보사의 송진우(宋鎭禹)는 1928년 1월 9일 경성지회에 입회했다. 동아일보에 대한 ‘12월당’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12월당’은 ‘민족혁명블록’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신문으로 조선일보와 함께 동아일보를 거론했다.<sup>52)</sup> 이는 재만동포옹호운동에 대한 동아일보의 기여를 고려할 때 가능한 일이었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의 ‘在滿同胞擁護와 各地團體’ 고정란처럼 ‘同胞擁護의大運動 坊坊谷谷에 『同盟』組織’이라는 재만동포옹호운동 소식란을 통해 옹호동맹의 지역 기반 확장을 홍보했다. 즉 재만동포옹호운동을 겪으면서 이 양대 일간지는 동등하게 평가되었다.

이처럼 ‘12월당’은 천도교 신파와 동아일보의 민족주의자들을 자치운동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1926년 하반기 자치운동을 피하려 했다고 알려져 있었고, 특히 같은 해 10월 최린(崔麟)의 동경행은 일본의 관민 유력자들과 자치운동을 협의하기 위한 출타라는 소문이 뒤따랐

49) 천도교청년당 당원수는 8,300여명(1927년 6월 시점)이었고, 천도교청년동맹의 동맹원 수는 1,299명(1930년 11월 시점)이었다(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a, 122쪽;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선인, 2006b, 261쪽 표7-4).

50) 해방 직후 평안도의 德川과 南浦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작성한 ‘천도교청우당원의 성분분석표’에 근거할 때, 농촌 지역은 빈농과 일부 중농을 중심으로 했고, 도시 지역은 노동자·기술자 등 블루칼라를 중심으로 했다(조규태, 위의 책, 2006a, 133~134쪽).

51) 성주현, 「1920년대 천도교의 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참여와 활동」, 『동학학보』 10, 동학학회, 2005, 212~220쪽 참조.

52) PГАСПИ, Ф.495, ОП.45, Л.25, Л.2-44, 1928년 9월 20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조선위원회 회의 속기록」, 『러시아문서 번역집』 22, 149쪽. ‘12월당’의 동아일보에 관한 관심은 언론매체라는 점에 중심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송진우 등의 민족주의자들은 ‘동아일보 계열 및 호남지역 정치세력’으로 범주화하고 이들의 신간회 입회의 내적 동인을 밝힌 연구로는, 윤덕영, 「신간회 초기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민족적 총역량 집중’론의 제기」, 『한국근현대사연구』 5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69~70쪽이 참조된다.



다.<sup>53)</sup> 그러나 1927년 6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와는 달리 지난 10월 최린의 동경행은 위장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치료를 마치고 1년간 구미 시찰을 할 예정이라고 부언했다.<sup>54)</sup> 이처럼 1927년 여름을 경과하면서 자치운동은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다. 따라서 천도교 신파와 동아일보의 자치운동 의사 여부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12월당'에서 자파의 성과로 보고한 신간회의 기반 확대 요소로서 천도교청년당과 동아일보는 옹호동맹의 구성 요소와 같았다. 즉 옹호동맹은 신간회 운동의 연장이었을 뿐 아니라 옹호동맹의 조직적 성과는 다시금 신간회로 결산되었다.

이는 천도교청년당과 동아일보의 민족주의자들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12월당'은 노총, 농총, 청총을 신간회에 단체가입케 하기 위한 자파의 활동이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sup>55)</sup> 역시 신간회의 대중적 기초의 확대 단계는 옹호동맹의 참여 단체와 같았다.

요컨대 옹호동맹은 신간회 활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그간 신간회에 포용되지 못했던 여타의 사회단체들을 망라했다. 또한 '12월당'은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위해 형성된 사회단체 연합을 신간회의 대중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한편 엠엘파를 중심으로 한 1928년 2월 27일 당대회를 치른 '2월당'<sup>56)</sup>은 옹호동맹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역시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지지했다.<sup>57)</sup> 따라서 지역 차원의 운동까지 모두 '12월당'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3)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108쪽.

54) 『東亞日報』, 1927년 6월 11일, 『1年豫定으로 崔麟氏洋行』; 『朝鮮日報』, 1927년 6월 11일, 『崔麟氏=歐米各國視察』. 자치운동을 둘러싼 소문은 1927년 6월 무렵 찾아들었다고 한다(한상구, 『1926~28년 민족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연구』 86, 1994, 한국사연구회, 146쪽).

55) ПРАСПИ, Ф.495, ОП.135, Д.156, ЛЛ.226-242, 1928년 7월 25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이동휘와 김규열의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대한 보고』, 『러시아문서 번역집』 22, 110쪽.

56) 1928년 2월 당대회에 대해서는, 임경석, 앞의 글, 2017, 148~152쪽 참조.

57) 金桂林(寄), 『1928년의朝鮮無產階級은 如何히鬭爭을展開할가?』, 『大衆新聞』, 1928년 1월 28일(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5, 국학자료원, 1999, 377쪽). 김계림은 대중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재만동포 구족을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전국 각지의 재만동포옹호동맹'을 '조선무산계급의 정치투쟁'의 하나로 열거했다.

### 3. 화교배척 진정 호소와 재만 조선인 박해의 근본 원인에 대한 문제제기

신간회 본부는 옹호동맹을 조직했고 각 지회는 이에 호응하여 재만동포 문제를 토의하는 한편 지역 사회단체들을 모아 지방동맹을 결성했다. 일제 경찰의 방해와 압박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는 주관적인 의지에 비해 미미했지만, 설립 지회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회들이 재만동포 문제를 현안으로 다뤘다.

재만동포 문제란 추방당하고 있는 만주 조선인과 배척받고 있는 국내 중국인이라는 두 가지 사안을 모두 포괄했다. 재만 조선인 추방 소식에 분노한 군중이 조선 사회에 삶의 터전을 일군 중국인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방하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옹호동맹은 만주 조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뿐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교배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1. 本同盟은 目下 急迫한 境遇에 빠진 在滿同胞의 利益을 積極的으로 擁護하는 것을 目的함.
2. 右를 貫徹키 爲하여 全朝鮮 各層의 各團體 및 有志한 人士는 本同盟에 加盟, 協力키를 促함.
3. 本同盟의 目的을 實現함에는 朝鮮 民族과 中國 國民 間의 友誼를 尊重히 하고 平和의 手段을 取하는 것이 必要함으로 우리 一般 民衆의 民族의 敵愾心을 衝動하여 一時的 興奮으로 朝鮮 內 居留 中國人의 生命, 財産에 危險을 미치게 하는 것은 不可한 일로 認定함.<sup>58)</sup>

1927년 12월 10일 옹호동맹은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옹호동맹은 ▶현재 만주에서 추방되고 있는 ‘재만동포의 이익’을 보호하는

58) 『東亞日報』, 1927년 12월 12일, 『各部署決定 聲明書發表』. 재만동포옹호동맹의 ‘성명서’는 네 개의 항으로 구성되었으나 4항은 삭제되었다.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밝혔고, ▶전 조선 사회단체의 가맹을 촉구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만주 조선인이 처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 민족'과 '중국 국민' 간의 친선 관계에 기반한 '평화적 수단'을 제시하면서 "일반 민중의 민족적 적개심을 충동"하여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옹호동맹과 이를 지지하는 전 조선 사회단체는 만주 조선인 추방 상황에 대처해 이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화교배척으로 드러난 군중의 배외주의(排外主義)적 분노를 자제시켜야 할 책무가 있었다. 이 성명서에 근거할 때, 화교배척은 만주 조선인 문제 해결의 방해 요소였다. 따라서 옹호동맹은 일차적으로 화교배척을 잠재워야 했다.

이는 12월 10일 옹호동맹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신간회 본부 총무간사회의 입장과 같았다. 당일 총무간사회에서도 각 지회 앞으로 조선 거주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가 가지 않도록 활동하라는 지시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sup>59)</sup> 또한 화교배척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전파되었다.

設令 示威行動을 是認한다 할지라도 偏狹한 民族感에서 일어나는 報復的 行動으로 끝나온다고 할진대 이는 그 擇할 바 對象을 錯覺함이 아닐런지! 朝鮮안에 있어서 華僑의 附植하고 있는 經濟的 勢力이 地方的으로 어느 程度까지 朝鮮內的 中小 商人과 勞動階級の 利益과 多少 衝突함이 잇기는 잇으나 이러한 機會에 釁端을지(꼬투리를 잡아서 - 필자) 그들을 排斥한다고 하면 그것이 正當한 對象을 일케 될 뿐 아니라 돌리어 在滿同胞를 擁護하라는 運動과 背馳되지 아니한 가하는 憂慮가 업지 못하다. 왜 그러하고 하니 첫재에 百萬을 넘기는 在滿同胞를 압해두고 中國民衆의 感情을 거슬리게 함은 돌리어 中國民衆의 同情을 일치 아니할가 하는 點이며, 둘째에 組織的 同胞擁護運動으로 하여금 官憲의 疑訝를 받게 하여서 그 運動을 挫折케 하는 點이다. ... 이러한 運動을 일으킴에 當하여

59) 『朝鮮日報』, 1927년 12월 12일, 「居留中國人에 報復迫害는不可」.

우리는 環境이 環境인 만치 더욱 細心한 注意를 가지고 가장 組織的으로 沈着하게 行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먼저 우리는 이 運動의 對象을 確認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며 둘째 行動에 잇서서 될 수 있는 데까지 成功의 可能을 考慮치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 在滿同胞擁護同盟에서도 그 運動을 展開함에 當하여 맞그로 積極的 行動을 하는 同時에 安으로 그 運動에 支障되는 모든 發作的 行動을 牽制하여써 그 最後의 成功을 達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sup>60)</sup>

위 『조선일보』 사설은 군중의 화교배척을 ‘편협한 민족감’에서 발생한 ‘보복적 행동’으로 규정했다. 즉 조선 거주 중국인에 대한 폭력 행사는 만주 거주 조선인들의 피해 상황을 빌미로 그간 중국인들과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과정에서 쌓인 불만의 표출과 다름없는 분풀이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 사설은 화교배척이 재만동포옹호운동에 역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화교배척은 재만동포옹호운동에 ‘배치’된다고 파악되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조선 거주 중국인들에 대한 폭력 행사는 조선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동정과 공감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조선 민족과 중국 국민 간의 우애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한 옹호동맹의 성명서와 일맥상통했다. 중국인들과 평온하고 화목한 관계 속에서 재만동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군중의 자중을 호소했던 『동아일보』의 사설 논조<sup>61)</sup> 역시 유사한 것이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 군중의 중국인 공격 행위가 일제 관헌을 과민하게 하여 옹호동맹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운동에도 불필요한 감시를 불러와 활동 전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요컨대 화교배척은 옹호동맹이 추구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의 길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조직적 확장과 활동의 영역을 차단시키는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옹호동맹은 화교배척과 같이 재만동포옹호운동에 “지장되는 모든 발작적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에 따르면, 옹호동맹은 군중의

60) 『朝鮮日報』, 1927년 12월 15일, 「社說 擁護運動에 對하여」.

61) 『東亞日報』, 1927년 12월 17일, 「社說 同胞여! 自重하라」.

화교배척을 진정시키는 활동을 포함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설은 재만동포옹호운동의 대상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화교배척의 대상인 조선 거주 중국인이 재만동포옹호운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대구를 이루었다. 상식적인 말이었다. 조선 거주 중국인은 만주 조선인 추방 문제와 무관했다. 오히려 화교배척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만들 뿐이었다. 따라서 만주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대상'부터 확인해야 했다. 이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상대로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만주 조선인 추방이 발생한 원인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 사설은 마치 옹호동맹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해설과 같았다. 각종 조선인 언론 매체의 대표들이 옹호동맹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일보』 사설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더욱이 이 사설의 집필자는 이관구(李寬求)였다.<sup>62)</sup> 이관구는 신간회 본부의 임원이었다. 명확한 선임 절차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1927년 7월 20일 본부 총무간사회에 출석<sup>63)</sup>했고, 같은 해 11월 5일 신간회 전체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안작성부원으로 선정<sup>64)</sup>되었다. 또한 12월 12일 총무간사회에서 평양지회 설립대회에 과전하기로 한 간사 중 하나<sup>65)</sup>였다. 아울러 그는 흥업구락부의 성원<sup>66)</sup>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관구가 집필한 위 『조선일보』의 사설은 신간회 본부와 옹호동맹을 구성한 정치세력 중 하나인 흥업구락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 사설은 만주 조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교배척을 억누르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재만동포옹호운동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 만주 조선인 박해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62) 이관구의 사설·시평 목록은 『이관구 선집』에 수록된 부록(372쪽)에서 참조함.

63) 京鍾警高秘 第8134號, 1927年 7月 21日, 『新幹會總務幹事會ノ件』, 1쪽.

64) 京鍾警高秘 第12533號, 1927年 11月 7日, 『新幹會本部大會準備委員會ニ關スル件』, 3쪽.

65) 京鍾警高秘 第14528號, 1927年 12月 20日, 『新幹會本部總務幹事會ノ件』, 2쪽.

66) 이관구는 1926년 4월 이래 흥업구락부 예회에 출석했다(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718~721쪽 별표1 참조).

흥업구락부와 함께 옹호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12월당’의 입장 역시 유사했다. ‘12월당’에서 코민테른 앞으로 보낸 아래 보고서는 옹호동맹에서 만주 조선인 박해의 원인을 어떻게 제기했는지 보여준다.

①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에서 간교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과 (100만 명 이상을 헤아리는) 이주 조선인들 간의 통일전선을 두려워하면서 이들을 서로 내몰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은 작년 말 “만주에서 중국인들에게 박해받는 조선인들을 보호하자”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신문 캠페인과 일본 경찰 첩자들이 행한 도발책동의 결과 조선 지역의 일부 장소에서 중국인들을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인들에게 증오와 복수를 일깨우기 위해 중국인 구타 소식을 최대한 어두운 색채로 묘사하여 보도했습니다.

② 우리 당의 주도로 “제만동포옹호동맹”<sup>\*</sup>이 설립되었고, 여기에는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농민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신간회, 천도교 및 기타 대중적 혁명단체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동맹은 대중들 사이에서 이들이 일본의 도발적 선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만주에서 조선인을 억압하는 자는 대개 중국인 주민들이 아니라, 외국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만주의 군벌<sup>\*\*</sup>과 지주들 그리고 부르조아지주들이라는 사실을 동맹은 해명했습니다. 동맹에 의해 소집된 시위와 집회 현장에 중국인 동무들이 초대되었으며, 형제적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도발 책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sup>67)</sup>

우선 이 보고서는 화교배척 사건의 발발 경위부터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화교배척은 ‘일본 신문의 대대적인 캠페인’과 ‘일본 경찰 첩자들의 책동’에 기인했다. 즉 중국인과 조선인 간의 적대감을 키우기 위한 의도적이고 과장된 일본 언론의 선전과 이를 전파·확산한 일제 정담꾼들의 활약이 원인이

67)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156, ЛЛ.226-242, 1928년 7월 25일, 앞의 이동휘·김규열 보고, 『러시아문서 번역집』 22, 111쪽, 360쪽. \*원문의 Комитет защиты корей цев в Маньчжурии는 “제만조선인수호위원회”로 번역되었는데, 필자는 ‘제만동포옹호동맹’으로 번역했다. \*\*또한 원문의 милитаристы는 ‘군국주의자들’로 번역되었으나, 필자는 ‘군벌’로 번역했다.

었다(인용문의 ①).

일본 언론의 개입과 정탐꾼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한 사설은 조선 민중이 만주 조선인에 관한 ‘많은 오류’를 쉽게 믿어 ‘탈선적 행동’이 빈번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현상은 ‘중부 이남 조선’에서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sup>68)</sup> 화교배척 사건의 70% 가량이 중부 이남에 해당하는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sup>69)</sup>에 비춰볼 때, 만주 이주 조선인에 대한 그릇된 말들이 이 지역에서 더 많이 유포되었다는 관찰은 주목할 만하다. 적어도 만주 조선인의 처지에 관한 허황된 말들이 민중 사이에 유포되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설은 옹호동맹에서 발표한 “재만동포 인명사상(人命死傷)이 풍설인 것을 석명(釋明)”해 대중의 흥분을 해소하고 만주 조선인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성명을 소개하면서 각 지역 ‘선구자’들이 민중 사이에 떠도는 ‘과장된 소식’을 정확하게 정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호응하듯 영일동맹에서는 만주 조선인에 관한 ‘정확한 소식’을 신문을 참고하여 민중에게 전달할 것과 ‘재만동포의 OO설’은 ‘풍설’이니 오해가 없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군내 사회단체 30여 곳에 발송했다.<sup>70)</sup>

이 사설에 따르면, 민중 사이에 떠도는 소문은 만주 조선인들이 상해를 입고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소문 속 만주 조선인 학살자는 중국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주 조선인 박해에 관한 풍문과 화교배척이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12월당’의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인들에게 박해받는 조선인들을 보호하자”는 일본 신문의 캠페인을 ‘일본의 도발적 선동’으로 규정했다. 이 캠페인에서 만주 조선인 박해의 가해자는 중국인이었다. ‘12월당’은 조선인들이 이와 같은 일제의 흑색선전에 휩쓸리지 않도록

68) 『朝鮮日報』, 1927년 12월 18일, 『社說 擁護同盟과 諸對策』.

69) 이정희, 앞의 글, 295쪽.

70) 『朝鮮日報』, 1928년 1월 10일, 『迎日擁護同盟 聖明書發表 일반에게 배부』.

옹호동맹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보고했다(인용문의 ②). 이는 소문에 미혹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 옹호동맹의 성명 내용과 같았다.

요컨대 ‘12월당’의 보고서와 언론 보도의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화교배척이 벌어진 계기는 만주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심하게 박해한다는 과장된 소문이었다. 그리고 옹호동맹의 화교배척저지 활동은 민중에게 알려진 소문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옹호동맹의 캠페인은 재만 조선인 박해가 중국인들의 배타적 민족 감정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해명하는 작업이었다. ‘12월당’은 ‘중국인 주민들이 아니라 ‘외국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만주의 군벌과 지주들,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재만 조선인들을 억압한다는 점을 캠페인에 담았다고 보고했다(인용문의 ②).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옹호동맹은 만주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한다는 선전 혹은 소문을 부인했고 제국주의와 결탁한 만주 지배 블록이 재만 조선인 박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대중에게 전파했다.

옹호동맹이 전개한 캠페인에서 만주 조선인 박해 문제를 군벌을 포함한 만주 지배 블록과 연결시킨 점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만주 군벌은 일제의 만주 진출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1927년 10월 일제는 만주 군벌 장쥘린(張作霖)으로부터 돈화(敦化), 장춘(長春), 길림(吉林), 해림(海林) 지역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해 북만 진출의 기회를 얻었다.<sup>71)</sup> 즉 재만 조선인 박해 문제를 군벌과 연결짓는 것은 일제의 만주 정책과 재만 조선인 압박 현상 간의 관련성을 함축했다.

또한 일제의 만주 적극 정책은 중국인들의 배일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일제가 재만 조선인을 만주 진출의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가령 1927년 3월 일제는 조선인 보호를 구실로 동변도(東邊道) 임강(臨江)에 영사관을 설치하려 했고 중국 관민의 반대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배일운동이 만주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재만 조선인 배척이 수반되었

71) 황민호, 『1920년대 후반 재만한인에 대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한인사회의 대응』, 『한국사연구』 90, 한국사연구회, 1995, 229쪽.



다.<sup>72)</sup> 따라서 만주 조선인 배척 현상은 배일운동의 '변태적 표현'<sup>73)</sup>이었다.

이처럼 재만 조선인 압박은 중국인들의 배일운동에서 파생되었고, 배일운동은 일제의 만주 적극 정책에 대한 반응이었다. 옹호동맹은 일제에 협조하는 만주 군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재만 조선인 박해가 일제의 만주 진출에 기인한다는 점을 암시했다.

요컨대 옹호동맹은 재만 조선인 박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만주에 대한 일제의 지배력 확장에 있다는 점을 대중에게 일깨우면서 화교배척 진정을 호소했다. 즉 재만 조선인 억압의 원인은 평범한 중국인들의 배타적이고 편협한 민족 감정이 아니라 일제의 중국 주권 침해 행위에 있었다.

결국 만주와 조선 양 지역 중국인과 조선인 간의 반목은 일제의 대외 팽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다. 따라서 양 민족의 반복되는 다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끝내야 했다. '12월당'의 보고에 등장하는 중국인과 조선인 간의 화해식(인용문 ②)은 일반 조선 민중에게 두 민족의 갈등 해소와 우애를 보여주면서 재만 조선인 박해의 근본 원인을 환기시키는 의식이었다. 즉 재만 조선인 문제의 재인식을 촉구하는 절차로 이는 화교배척과 같은 폭력적인 복수와 다른 진정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이처럼 옹호동맹의 화교배척 저지 의지는 뚜렷했다. 옹호동맹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신간회 본부의 의지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이면에서 옹호동맹과 신간회를 뒷받침했던 정치세력인 흥업구락부와 '12월당' 역시 화교배척으로 분출된 민중의 분노를 완화시키고자 했다.

신간회 지회와 지방동맹 차원에서도 재만 조선인 문제에 관한 연설회, 강연회, 주민대회가 기획되었다. 원활하게 실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에서 민중을 소환해 화교배척 저지를 위한 공론을 모으고자 했으리라 여겨진다. 옹호동맹에 가맹 또는 이를 지지하고 후원하겠다는 신간회 지회의

72) 손춘일, 「만주사변 전후 재만조선인 문제와 그들의 곤경」,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8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153~154쪽.

73) 『朝鮮日報』, 1927년 12월 21일, 「社說 眞正한運動은 지금부터 在滿同胞를救하는 일」.

결의나 중앙과 보조를 함께 하겠다는 지방동맹의 결의는 옹호동맹의 입장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927년 12월 이래 옹호동맹의 화교배척 저지 활동은 1931년 화교배척에 대한 조선 사회의 대응과 비교할 때 특징적이었다. 1931년 7월 3일부터 시작된 화교배척 사태의 계기는 『조선일보』의 과장된 오보였다. 『조선일보』는 만보산(萬寶山)에서 일어난 중국인 농민과 조선인 농민 간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충돌 사건을 조선인들이 학살된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하면서 민중의 배외주의적 감성을 자극했다.<sup>74)</sup> 또한 1931년 7월 화교배척 사건이 일어났을 시점 이를 의식적으로 저지시킬 만한 사회운동 단체 역시 부재했다. 신간회는 해소된 후였고, 1920년대 사상단체와 신간회에서 활동했던 상당수의 사회주의자들은 일제에 의해 예비 검속되었다.<sup>75)</sup>

1927년과 1931년 화교배척 사건에 대한 사회적 대응 양상의 차이는 피해 규모의 차이로 이어졌다. 폭동을 방지할 주체가 없었던 1931년 화교배척 당시 사망자는 127명을 헤아렸고 피해액은 250만원<sup>76)</sup>에 이르렀다. 반면 화교배척 사태를 진정시키고 확산을 예방하고자 했던 신간회의 의식적인 활동이 있었던 1927년 그 피해 정도는 현격하게 작았다. 사망자는 두 명에 그쳤고 피해액도 9,567원<sup>77)</sup>이었다. 따라서 옹호동맹이 “어느 정도의 배화적(排華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sup>78)</sup> “신간회 지회 또는 조선청년단이 중심이 되어” 화교배척을 했다<sup>79)</sup>는 결론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74) 최병도, 「萬寶山 사건 직후 華僑排斥事件에 대한 日帝의 대응」,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301쪽. 만보산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과장된 보도의 원인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이의 민족주의 담론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 연구로는 이상경, 「1931년의 '배화(排華)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11, 만주학회, 2011 참조.

75) 윤상원, 「만보산 사건과 사회주의자들의 중국 인식」,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274~278쪽.

76) 朴永錫 역, 『리턴 보고서』, 探求堂, 138쪽(최병도, 앞의 글, 298쪽에서 재인용).

77) 이정희, 앞의 글, 296쪽.

78) 박영석, 「일제하의 재만 한인 박해문제 - 재만동포옹호동맹의 활동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5-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220쪽.

79) 박정현,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 『중국학보』 69, 한국중국학회, 2014, 113쪽.

#### 4.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일본국적법 적용 주장과 반식민주의적 효과

옹호동맹은 군중의 화교배척과 그 확산을 저지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재만 조선인 박해가 벌어진 근본 원인이 중국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의 대외 팽창에 있다는 점을 민중에게 전달하고자 했고, 이는 중국인들과의 화해와 친선 다짐의 표현으로 드러났다.

화교배척과 같은 폭력과 대조되었던 양 민족 간 우애의 강조는 만주 조선인 문제 해결의 기본 틀이었다. 이는 두 민족 간의 친화적 관계 속에서 재만 조선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였다.

중국 민중과의 친선 도모라는 추상적 해결 방안은 만주 조선인의 중국 입적 지지 주장으로 구체화되었다.<sup>80)</sup> 아래 『조선일보』의 한 사설은 재만 조선인의 '영구한 생존 발전'을 위하여 '대거 입적'을 주장했다. 즉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중국의 국적을 취득해야지만 생존해 갈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처음부터 추방의 범위는 '입적하지 않은 조선인들'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길림성 측에서는 재만 조선인들이 입적한다면 퇴거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sup>81)</sup> 즉 중국측에서는 만주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았다. 따라서 만주 조선인들의 입적 주장은 중국 국적 취득을 통해 만주에서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지는 말이었다. 그런데 만주 조선인의 입적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80) 1927년 재만 조선인 구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재만 조선인들의 중국 국적 취득 지지론은 기존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검토되었고 일제(매일신보)와의 비교 작업도 이루어졌다(이명중, 앞의 글, 159~183쪽; 채관식, 『만주사변 전후 국내 민족주의 계열의 재만조선인 국적문제 제기와 민족인식의 논리』, 『한국근현대사연구』 69,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108~111쪽). 조선인들 혹은 조선 민족주의자들과 일제 사이의 인식 차이를 말해주는 이 연구들은 재만 조선인 문제를 둘러싼 당대 논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신간회의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재구성하고 그것의 성격을 재검토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81) 『東亞日報』, 1927년 12월 18일, 『吉林縣附近一帶 朝鮮人退去法令緩和 在住同胞의必死의努力成效 交渉代表에省長言明』.

入籍問題에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二重國籍 問題이다. 中國의 官民의 身輕을 수그러지게 하는 것도 이 문제이요, 朝鮮人同胞가 용이히 安定되지 못하는 原因도 이에 말미암음이다. 그리고 入籍을 결정하는 이상 二重國籍의 解除를 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찍 加州(캘리포니아 주-필자)에서 排日이 劇烈함에 因하여 日本의 爲政者는 日本人의 歸化權 獲得을 위하여 國籍法을 改正한 바 있었으니, 在滿 朝鮮人의 生活 安정을 위하여서도 당연히 이와 같은 處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sup>82)</sup>

만주 조선인들이 입적의 절차를 밟아 중국 국적을 취득해도 남는 문제는 ‘이중국적 문제’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선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중국에 입적한 만주 조선인들의 이중국적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만 조선인들의 이중국적 상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제의 법률 적용과 관련되었다. 즉 일제는 “한국인의 외국 귀화를 금”하는 구한국 법률에 따라 중국에 귀화한 조선인이더라도 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sup>83)</sup> 법적으로 조선인들의 탈적(脫籍)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일본의 개정 국적법(1924)과 차이가 났다. 개정 국적법은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이 미국 배일운동의 표적이 되자 국적 이탈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 법은 조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sup>84)</sup> 이렇듯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등적인 법률 적용으로 인해 만주 조선인들은 중국에 입적해도 일본 국적이 남게 되어 이중국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만주 조선인들에 대한 이중국적 해제 요구는 조선인에게도 일본국적법을 적용해 국적 이탈권(탈적권)을 보장하라는 의미였다. 이 주장은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동등한 법률 적용을 주문하는 것이었다. 위 사실은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적법 개정을 통해 일본

82) 『朝鮮日報』, 1928년 1월 10일~12일, 「社說 在滿同胞의 諸對策-入籍問題를 중심으로」, 안재홍선 집간행위원회 편, 『민세안재홍선집』 1, 지식산업사, 1981, 260~261쪽.

83) 『東亞日報』, 1927년 12월 18일, 「法律上歸化問題 複雜한二重國籍」.

84) 최경옥, 「일본 국적법의 체계와 운용」, 『공법학연구』 15-2,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190~191쪽.

인들의 귀화권을 인정했듯 만주 조선인들을 위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위 사실은 안재홍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안재홍은 신간회 본부 간부로 옹호동맹에 참여했다([표1]). 또한 그는 흥업구락부 회원이었고([표3]), 신간그룹의 모임에 참석<sup>85)</sup>했다. 즉 그의 견해는 비밀결사 흥업구락부를 대변했을 뿐 아니라 흥업구락부가 관계한 옹호동맹과 신간회의 입장이기도 했다. 옹호동맹 역시 만주 조선인 문제의 대책으로서 이들의 중국 입적과 이중국적의 해제를 주장<sup>86)</sup>했다.

이처럼 옹호동맹은 조선인에게도 일본인과 같은 법률 적용을 통해 조선인들의 권익을 추구했다. 조선인도 제국 일본의 구성원으로서 일본인과 차별 없는 법률적 권리 보장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는 제국 일본을 구성하는 지배민족과 약소민족의 법적 동등성 주장으로 재만동포옹호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의제는 민족동권이였다.

민족동권론은 신간회의 비타협성에 대한 의문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민족동권은 식민지 체제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은 채 일본 법률 체계에 의존해 일본국적법의 적용을 통한 국적 이탈권의 보장이라는 조선인의 법적 권리 주장이었다. 식민지 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생략한 약소민족의 법적 권리 주장은 조선인들에 대한 일제의 통치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체제 저항적 또는 항일적이라기보다는 개량적이였다.

또한 재만동포옹호운동은 직접적인 대중의 시위투쟁과 같은 실천을 아예 기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비타협적 운동에 대한 연구사적 관념과는 차이가 있다. 즉 옹호동맹은 언론을 최대한 활용했고, 지방동맹 혹은 신간회 지회 차원에서는 강연회·연설회·주민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했다. 이처럼 재만동포옹호운동은 대중의 직접 행동을 조직하기보다 대중의 의식에 작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신간회는 애초부터 대중의 실천적 투쟁을 조직하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간회의 온건

85) 김영진, 앞의 글, 2011, 185쪽 각주 29번 참조.

86) 『朝鮮日報』, 1928년 2월 5일, 『四圍情勢를보아서 中國入籍을支持』.

성은 비타협성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가 아니라 신간회 운동으로 기획된 특징이었다.

이처럼 민족동권 주장으로 드러난 신간회 운동은 현상적으로 볼 때 식민지 체제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이슈 생산을 절제하고 일제의 법률 체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개량적이었고 반체제적인 집단행동의 조직을 회피하고 대중의 의식 각성을 피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온건했다.

한편 조선인에게도 일본인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족동권론은 자칫 잘못하면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인정하라는 신민화 운동으로 비약될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 조선인에 대한 일본국적법 적용·국적 이탈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 민족동권론은 결과적으로 일본 신민으로서 만주 조선인의 지위를 부정하는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일본국적법의 적용과 동시에 만주 조선인은 일제의 법률에서 벗어나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만 조선인 박해 문제의 해결책은 만주 조선인이 중국 국민이 되어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궁극적으로 만주 조선인들을 중국 법률 체계 아래 두기 위해 일본 국적 이탈이 요구되었고 국적 이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본국적법 적용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재만동포옹호운동의 민족동권 주장은 일제의 권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제의 통치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었다.

이와 같은 옹호동맹의 만주 조선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일제의 그것과 달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재만 조선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상조권 관철을 최우선에 두었다.<sup>87)</sup> 일제의 토지상조권 주장은 1915년 「남만주와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 제2조 “日本臣民은 南滿에서 각종 상공업 상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또는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土地를 商租함을 得함”에 근거했다. 일제는 이 조약의 토지상조권을 소유권으로 해석하는 한편 만주 조선인에게도 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sup>88)</sup> 이는 만

87) 『每日申報』 1928년 1월 17일, 「商租權問題解決이急務」.

88) 孫春日, 『“滿洲國”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 研究』, 백산자료원, 1999, 55쪽, 59~61쪽, 85쪽.

주 조선인을 일제의 외교 영역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구상에서 만주 조선인은 일본 신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이처럼 토지상조권을 중심으로 한 일제의 재만 조선인 문제 해결책은 재만 조선인 박해를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판되었다. 상조권 관철은 일제의 만주 진출 적극화를 의미했고 이는 중국 관민의 배일운동을 고조시킬 것이었기 때문이다. 만주로 팽창하고자 하는 일제는 상조권을 관철하고자 하겠지만 국권 수호를 위한 배일열 속에서 중국 측은 상조권을 회수하리라고 예측<sup>89)</sup>되었다. 결국 일제의 방책이 현실화될 경우 만주 조선인들은 '일본 대륙정책의 전위'라는 중국인들의 의심<sup>90)</sup> 속에서 끊임 없는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요컨대 중국 법률의 보호하에서 만주 조선인의 생활 안정을 구하고자 한 재만동포옹호운동은 만주 조선인들을 일제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제의 만주 진출에 저항하는 중국 관민의 박해 대상이 되었던 만주 조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 방책이었고, 만주 조선인들을 일본 신민으로 묶어 두면서 일제의 만주 개척에 이바지하도록 했던 일제의 의도와 충위를 달리했다.

조공 역시 재만 조선인들의 중국 입적을 지지했다. 이들은 만주 조선인들이 중국에 입적치 않으면 '제국주의에 이용'되어 '중국 노농대중을 敵視'하게 될 뿐<sup>91)</sup>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제 만주 정책을 따라갈 때 일본의 신민으로서 만주 조선인들은 중국 민중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만다는 반복된 경험에 근거한 우려로 재만 조선인들이 일제와 관계를 끊고 중국 국적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했다.

이처럼 재만동포옹호운동의 사회적 의제 민족동권론은 일제의 만주 조선인 문제의 해결 방식과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일제의 문화통치를 뒷받침했던

89) 『朝鮮日報』, 1928년 4월 2일, 『社說 商租權問題와 歸化運動』.

90) 이는 재만 조선인 추방의 원인 중 하나로 열거되었다(『朝鮮日報』, 1928년 1월 10일~12일, 『社說 在滿同胞의 諸對策-入籍問題를 중심으로』,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편, 앞의 책, 255쪽).

91) 『大衆新聞』, 1928년 4월 1일, 『在滿200萬同胞의 中國入籍은 必然不可避다』(박경식 편, 앞의 책, 386쪽).

내선융화 이데올로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다. 내선융화 이데올로기는 일본과의 공존 속에서 조선인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sup>92)</sup>으로 조선인들의 독립 관념을 약화시켜 조선인 각 개인의 생존을 식민지 체제 속에서 추구하도록 했다. 상조권을 중심으로 한 일제의 만주 조선인 문제의 해결 방향 역시 만주 조선인들의 생존과 생활 안정을 일제의 대외 팽창 정책 내에서 피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제의 만주 진출을 정당화하면서 만주 조선인들의 보호자로서 일제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동권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여러 대중 집회를 통해 확산시키면서 만주 조선인이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공론 형성을 위한 신간회의 활동은 미화된 일제의 침략주의적 발상이 식민지 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신간회의 활동은 일제의 만주 조선인 문제 해결책이 중국 관민의 만주 조선인들에 대한 박해를 부추기면서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대중에게 일깨우고 은연중에 각인된 혹은 각인될지도 모를 일제의 만주 진출과 만주 개척의 긍정적 이미지를 깰 여지를 만들었다.

재만동포옹호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민족동권론은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었고 각 지역 사회에서 지방동맹과 신간회 지회는 강연회·연설회·주민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집회를 통해 이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또한 신간회 지회의 대회 자리에서 ‘재만동포 문제의 건’이 토의되기도 했다. 경찰의 금지 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집회와 토의가 금지되었다고 해도 계속된 회합의 시도는 지역 사회 내에서 재만 조선인 문제를 대중 사이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또한 옹호동맹에 대한 격려문, 관계당국에 대한 항의문 발송 등의 활동 역시 대중에게 옹호동맹이 제시한 재만 조선인 문제 해결 방안의 타당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리라 여겨진다.

결국 언론과 신간회 지회를 매개로 한 조선인에 대한 일본국적법 적용 및 국적 이탈권 보장과 중국 국적 취득을 지지하는 내용의 민족동권 주장은 일

92)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33쪽.



제가 곧 만주 조선인의 보호자라는 일제가 만든 허황된 상을 흡수할 수 있는 조선 민중의 의식 회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이는 또한 조선 거주 조선인들에게도 이들의 삶 역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사고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었다.

요컨대 재만동포옹호운동은 일제가 조선 민중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선전했던 내선융화 이데올로기의 일방적 전파·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문화통치기 일제의 사회 통합 전략의 실현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반식민주의적이었다.

이상 재만동포옹호운동의 사례에서 볼 때 신간회는 광범위한 대중을 조직해 식민지 체제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항일적 실천투쟁을 계획하지 않았다. 신간회는 조선 민중을 소집해 이들 스스로 자신의 의식 속에 침윤된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즉 신간회의 활동 목표는 조선 민중에 대한 일제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의 약화였다. 이렇듯 신간회 운동은 외형적으로 식민지 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개량성을 보였지만 식민지 민중의 의식을 둘러싸고 식민지 체제와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 따라서 민족동권의 사회적 의제를 제기한 신간회 운동은 식민지 체제를 균열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중국 관현의 재만 조선인 추방과 끝이은 화교배척을 배경으로 옹호동맹이 조직되었다. 옹호동맹은 신간회 본부의 적극적 참여로 결성되었고, 이를 뒷받침했던 정치세력은 흥업구락부, 조공('12월당')과 천도교 구파로 신간회 본부와 같았다. 이들은 신간회 지회를 매개로 옹호동맹의 지역적 기반을 다지고자 했고, 신간회 지회는 옹호동맹의 지방 확산에 기여했다. 신간회 지회 가운데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지회가 만주 조선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현재까지 확인했을 때 단일 사건으로서 신간회 운동 전 기간 동안 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은 없었다.

옹호동맹은 외교배척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이를 저지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했다. 무엇보다도 만주 조선인 학살 소문을 정정하고 재만 조선인 문제가 중국인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했다. 이는 재만 조선인 박해의 근본 원인이 일제의 만주 진출에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 민족과의 친선 관계의 강조는 옹호동맹에서 외교배척과 다른 해결책 제시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조선 민족과 중국 국민 간의 우의에 대한 중시는 중국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주 조선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며, 이는 재만 조선인의 중국 입적 지지 주장으로 구체화되었다. 재만 조선인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인에게도 일본국적법을 적용해 탈적을 허용하라는 주장이기도 했다. 즉 재만동포옹호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의제는 조선 민족에게도 일본 민족과 동등한 법률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민족 동권이었다. 이처럼 신간회 운동은 외형적으로 조선인들에 대한 일제의 통치권을 전제한 개량적인 법적 권리 획득 운동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족동권론은 일제의 재만 조선인 문제 해결의 방식과 달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제는 상조권 관철을 통해 만주 진출을 적극화하고 만주 조선인들을 일본의 신민으로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일본국적법의 적용과 중국 입적을 통해 재만 조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옹호동맹의 견해와 충돌되었다. 만주 조선인들에게 일본국적법을 적용할 경우 이들은 중국 국민으로서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재만 조선인의 국적 이탈권 보장과 중국 입적 지지는 일제의 세력 범위에서 재만 조선인들을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

신간회 지회에서 기획한 강연회·연설회·주민대회와 지회대회는 이와 같은 주장을 조선인 사회의 공론으로 만들려는 과정으로 이는 일제가 곧 만주 조선인의 보호자라는 허황된 상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조선 거주 조선인들에게도 이들의 삶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사고될 필요가 없다는 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신간회 운동의 방향은 내선융화 이데올로기가 조선 민중의 의

식에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즉 신간회는 일제에 대한 민중의 직접 행동의 조직이 아닌 조선 민중에게 미칠 일제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식민지 체제와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

따라서 재만동포옹호운동의 사례에서 볼 때 신간회의 민족동권 운동은 조선 민중이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에 흡수되거나 동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반식민주의적 효과를 피하면서 식민지 체제를 균열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표] 지방동맹의 재만동포옹호동맹 가맹 현황(1928년 2월 6일)

날짜	지역	참여단체	신간사회 참여
1927.12.10	群山	미상	△
1927.12.11	天安	· 군민대회에서 재만동포옹호동맹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위원 33인 선정	‘x’
1927.12.12	安州	· 新幹會 安州支會, 安州青年會, 安州基督青年會, 安州農民協會, 安州天道教青年黨, 安州市民協會, 安州勞動組合	○
1927.12.13	水原	· 신간회 수원지회 외 3단체	○
1927.12.13 이후	光州	· 1927.12.13. 평주 지역 각사회단체 대표자 대책 강구회, 新幹會 光州支會, 光州青年同盟, 全南青年聯盟, 光州教育普及會, 光州弓術會, 光州商工會 東亞日報 光州支局, 朝鮮日報 光州支局, 中外日報 光州支局, 光州基督青年會	○
1927.12.13 이후	扶安	미상	‘x’
1927.12.14	平壤	· 평양 지역 23개 단체 - 신간회 평양지회, 청년연맹, 노동연맹, 기독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등	○
1927.12.15	咸陽	미상	△
1927.12.17	開城	· 新幹會 開城支會, 開城青年聯盟, 開城商友會, 高麗青年聯盟, 松都店員會, 開城記者團, 松都俱樂部	○
1927.12.18	雄基	· 慶興郡青年團聯盟, 慶雄青年會, 雄一青年會, 基督教青年會, 天道教青年黨, 雄基女子青年會, 基督教女子青年會, 勞働親睦會, 勞友會, 布木商組合, 雄基商務會	△
1927.12.19	城津	· 신간회 성진지회 주최	○
1927.12.22	淳昌	미상	‘x’
1927.12.26	濟州	· 제주청년회 제주기자단, 제주기독교회, 산지청년회, 제주부인회, 제주여자청년회, 제주학우회, 제주공보동창회, 제주음사 등	‘x’
1927.12.26	馬山	· 마산부 내 각 사회단체 · 마산 신간회 지회와 마산청년동맹 양단체의 발기	○
1927.12.28	龍川	· 1927.12.16. 신간회 용천지회 정치조사부에서 군내 각 단체와 유지에게 서면으로 대회를 통지하기로 결정(12월 28일)	○
1927.12.29 이전	釜山	· 부산청년동맹 등	△
1927.12.29	廣州	미상	△
1928.1.3	浦項	· 신간회 영일지회를 위시한 각 사회단체 · 영일동맹으로 명칭 변경 결정	○
1928.1.8	法聖浦	미상	‘x’

?	端川	미상	?
?	東倉	미상	'x'

\* 신간회 지회 참여 여부: ○ 참여, 'x' 지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 참여 추정(신간회 지회에서 논의된 경우), ? 미상.

\* 출처: 『東亞日報』, 『朝鮮日報』.

■ 참고문헌

-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현대평론』.
- 京鍾警高秘 第2413號, 1927年 2月 28日, 『新幹會常務幹事增選ノ件』.
- 京鍾警高秘 第7832號, 1927年 7月 13日, 『新幹會本部總務幹事會ノ件』.
- 京鍾警高秘 第8134號, 1927年 7月 21日, 『新幹會總務幹事會ノ件』.
- 京鍾警高秘 第12533號, 1927年 11月 7日, 『新幹會本部大會準備委員會二關スル件』.
- 京鍾警高秘 第14528號, 1927年 12月 20日, 『新幹會本部總務幹事會ノ件』.
- 京鍾警高秘 第14900號, 1927年 12월 27日, 『天道教青年同盟大會ノ件』.
- 류시중 · 박병원 · 김희곤 역주, 『국역 고등경찰요사』, 선인, 2010.
- 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5, 국학자료원, 1999.
-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 편, 『민세안재홍선집』 1, 지식산업사, 1981.
- 이반송 · 김정명 지음, 한대희 편역, 『식민지 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1986.
- 이신복 편, 이관구 저, 『成齋李寬求論說選集』, 일조각, 1986.
- 강성희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XX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선인, 2015.
- 이완중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XXII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선인, 2015.
-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 孫春日, 『“滿洲國”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 研究』, 백산자료원, 1999.
- 신용하, 『신간회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 전명혁, 『1920년대 한국 사회주의 운동 연구』, 선인, 2006.
-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a.
- \_\_\_\_\_,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선인, 2006b.
- 김영진,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과 ‘비타협’ 논쟁』, 『서울과 역사(구 향토서울)』 78, 서울역사편찬원, 2011.
- \_\_\_\_\_, 『정우회 선언의 방법과 내용』, 『사림』 58, 수선사학회, 2016.
- \_\_\_\_\_, 『1927년 하반기 식민지 정치운동 논쟁: 청산론 논쟁 재검토』, 『역사연구』 42, 역사학연구소, 2021.
- 박영석, 『일제하의 재만한인 박해문제 - 재만동포옹호동맹의 활동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5-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 박정현,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 『중국학보』 69, 한국중국학회, 2014.
- 성주현, 『1920년대 천도교의 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참여와 활동』, 『동학학보』 10, 동학학회, 2005.
- 손춘일, 『만주사변 전후 재만조선인 문제와 그들의 곤경』,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8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 윤덕영,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 \_\_\_\_\_, 『신간회 초기 민족주의 세력의 정체인식과 ‘민족적 총역량 집중’론의 제기』, 『한국근현대사연구』 56,

2011.

- 윤상원, 『만보산 사건과 사회주의자들의 중국 인식』,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 윤희정, 『신간회의 창립 과정 연구 -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75, 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원, 2017.
- 이명중,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연구』, 한양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이상경, 『1931년의 '배화(排華)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11, 만주학회, 2011.
- 이애숙, 『1922~1924년 국내의 민족통일전선운동』,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 이정희,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동양사학연구』 135, 동양사학회, 2016.
- 임경석,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 \_\_\_\_\_, 『강달영,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 \_\_\_\_\_, 『김철수와 조선공산당 제2회 대회』, 『역사비평』 60, 역사비평사, 2002.
- \_\_\_\_\_, 『1927년 조선공산당의 분열과 그 성격』, 『사림』 61, 수선사학회, 2017.
- 채관식, 『만주사변 전후 국내 민족주의 계열의 재만조선인 국적문제 제기와 민족인식의 논리』, 『한국근현대사 연구』 69,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 최경옥, 『일본 국적법의 체계와 운용』, 『공법학연구』 15(2),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 최규진,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정책』, 『대동문화연구』 32, 성균관대학교 대동 문화연구원, 1997.
- 최병도, 『萬寶山 사건 직후 華僑排斥事件에 대한 日帝의 대응』,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 한상구, 『1926~28년 민족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연구』 86, 한국사연구회, 1994.
- 황민호, 『1920년대 후반 재만한인에 대한 중국당국의 정책과 한인사회의 대응』, 『한국사연구』 90, 한국사연구회, 1995.

## Singanhoe's Ethnic Equality Movement between pro and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Regime

— Focusing on a Campaign for Protecting Manchurian Koreans —

Yoon, Hyojung\*

This study explored aspects of that Singanhoe cracked the Japanese colonial regime focusing on a campaign for protecting Manchurian Koreans. The campaign was developed through the Alliance for Protecting Manchurian Korean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MK). The APMK was made by the leaders of Singanhoe headquaters, and branches of Singanhoe contributed to the regional spread of the APMK. The campaign corrected rumors that Chinese slaughtered innocent Koreans in Manchuria and clarified that the deportation of Koreans was not caused by plain Chinese in Manchuria with the opposition to Koreans' attacks on the Chinese i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he APMK declared to solve sufferings that Koreans were experiencing cementing friendly relations with Chinese and argued Manchurian Koreans' acquisition of Chinese nationality. This meant that the colonial state should have applied the Japanese Nationality Act to Koreans; therefore, the Singanhoe movement, represented by the campaign for protecting Manchurian Koreans, was an ethnic equality movement to assert the same rights as Japanese and revealed itself as a kind of civil rights movement.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hat this

---

\* a Professor of Academic Research, Sunchon National University's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played a role in disrupting the spread of the ideology of the harmony between Japanese and Koreans made by Japanese colonialists. If Koreans in Manchuria had been subject to the Japanese Nationality Act, they, as Chinese people, would have been protected by Chinese laws. This idea differed from the Japanese solution to protect Manchurian Koreans as Japanese subjects by giving them ownership of the lands. This showed that the APMK sought effectiveness to destabilize the image that the Empire of Japan was Manchurian Koreans' guardian. Also, this implicated that it was not necessary to consider Koreans' lives improved in the prosperity of the Empire of Japan. Therefore, the Singanhoe movement, when figuring out in the case of the campaign protecting Manchurian Koreans, had anti-colonialism characteristic to help Koreans breaking away from the colonial ideology and played a part in cracking the colonial regime.

**Key words** : Movements of National Cooperation Front, Singanhoe, the Alliance for Protecting Manchurian Koreans, Koreans' Attacks on the Chinese in the Korean Peninsula, Japanese Nationality Act, Right to Renounce Nationality, Ethnic Equality Movement, Anti-colonialism

